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을 종전의 직급(4·5급)으로 환원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스마트한 관세행정 실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관세청의 정원 3명(4·5급 3명)과 세관관서의 정원 3명(4·5급 3명)을 종전의 직급(사무운영9급 3명, 관세8급 3명)으로 각각 환원하고,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퇴직 등 결원발생에 따른 정원조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29. ~ 5.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6호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연구개발장비팀”을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정보관리담당관·빅데이터분석팀·연구개발장비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을 “빅데이터분석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연구개발장비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빅데이터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제3조의5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5”를 “4”로 하고, 서기관 또는 행

정사무관 “15”를 “12”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을 “2”로 하고, 기록연구사 1 다음에 “사무운영서기보 3”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공업서기 “24”를 “25”로 하고, 공업서기보 “6”을 “7”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2”를 “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별표 8의2 중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를 “12”로 하고, 관세서기 “984”를 “987”로 하며, 공업서기 “22”를 “23”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6”을 “7”로 하며, 기계운영서기 “2”를 “1”로 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6”을 “5”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2(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을 감축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8의2(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을 감축하고, 관세서기 3명을 증원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획조정관) ① ~ ⑤ (생략)	제3조(기획조정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⑥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u>공익근무요원</u> 자원의 획득 · 배정 및 복무관리	6. <u>사회복무요원</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생략)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u>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 · 연구개발장비팀</u> 및 시스템운영팀을 두되,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및 정보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연구개발장비팀장</u>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 정보관리담당관 · 빅데이터분석팀 · 연구개발장비팀</u> ----- ----- ----- ----- <u>빅데이터분석팀</u> 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u>연구개발장비팀장</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빅데이터분석팀장은 다음 사

⑤ · ⑥ (생략)

제3조의5(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차장 밑에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 1명을 둔다.

②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관세청빅데이터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향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1. 관세행정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4. 관세행정 관련 업무자동화(RPA)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삭제>

구축 · 운영 및 유지 · 관리

2.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수집 · 관리

3.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 인공지능 활용 과제 발굴

4. 관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 인공지능 활용 과제 수행 및 기술 지원

신 · 구정원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의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u>5</u>	<u>4</u>	-1
·	·	·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5</u>	<u>12</u>	-3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1</u>	<u>2</u>	+1
·	·	·	
·	·	·	
<u>사무운영서기보</u>	<u><신 설></u>	<u>3</u>	+3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			<u>24</u>		<u>25</u>	+1
		•		•	•	
		•		•	•	
공업서기보			<u>6</u>		<u>7</u>	+1
		•		•	•	
		•		•	•	
기계운영서기			<u>2</u>		<u>1</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6</u>		<u>5</u>	-1
		•		•	•	
		•		•	•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의2]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 <u>15</u>	· <u>12</u>	-3
· 관세서기	· <u>984</u>	· <u>987</u>	+3
· 공업서기	· <u>22</u>	· <u>23</u>	+1
· 공업서기보	· <u>6</u>	· <u>7</u>	+1
· 기계운영서기	· <u>2</u>	· <u>1</u>	-1
· 열관리운영서기보	· <u>6</u>	· <u>5</u>	-1
·	·	·	